

품명	조제 연마페이스트(paste)·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			
HS code	3405.40			
관세율(%)	MFN	RCEP		
		'24	'23	'24
		'25		
	6.5	0	8	7
		6		



선정 사유

▶ 해당 품목의 對중 수출증감률은 '23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, '24년 9월 기준 전년 동일 분기 대비 32.5%의 증가율을 기록함

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3405.40)

(단위 : 천 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9	26,483	22.7
2020	36,078	34.0
2021	49,473	38.8
2022	55,012	15.5
2023	39,218	-36.6
2023.9	29,093	-40.6
2024.9	41,726	32.5

▶ 산업 고도화, 첨단 반도체 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밀 공정 기술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동 품목을 3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중
수출동향

(HS 3405.40)

▶ 해당 품목은 조제 연마페이스트(paste)·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(HS 3405.40)으로 특개된 세번이며, 對중 수출금액은 잠시 주춤했던 '23년 기준 대비 다시 회복하여 증가하고 있음

한국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3405.4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 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3분기
		총계	55,012	39,218	41,726
1	3405.4	조제 연마페이스트(paste)·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	55,012	39,218	41,726
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3405.40)

▶ HS 3405.40(조제 연마페이스트(paste)·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) 對중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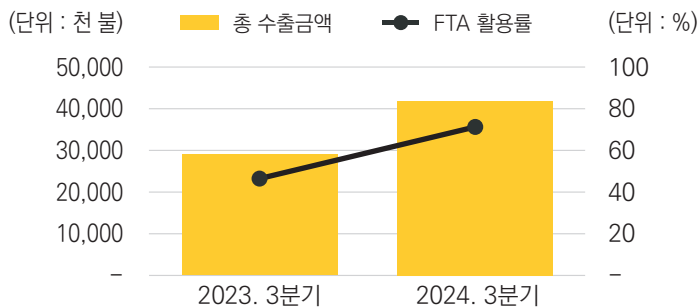
- FTA 활용률 '23년 3분기 46.8%, '24년 3분기 71.2%로 나타남

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한-중 FTA의 경우 CTH, RCEP의 경우 CTH or RVC 40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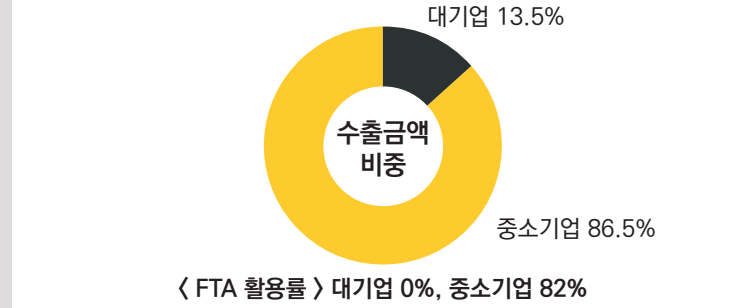
▶ '24년 3분기 기준, HS 3405.40호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3.5% 중소기업 86.5%임
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0%, 중소기업 82%임

[HS 3405.40 對중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3~2024)]



[HS 3405.4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3분기)]



중국 수입 동향

- ▶ '24년 9월 기준 중국의 HS 3405.40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, 독일, 미국, 스위스, 프랑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(25.7%), 독일(18.2%), 미국(9.7%), 스위스(6.4%), 프랑스(5.9%)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'24년 9월 기준 8위 수입국(4.4%)에 위치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해당 품목(조제 연마페이스트 이하 생략)은 전자 반도체, 자동차(항공) 부품 가공 등 고순도·고정밀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정밀 연화제임. 전자전기제품 제조 공정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
 - '24년 9월 기준,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감률은 41.6%로 상위권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수입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 - * 중국은 일본, 프랑스, 영국 등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, 다른 국가로의 수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
- ▶ 수출하려는 물품에 신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, '21년부터 시행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등기방법(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办法)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생산 또는 수입 전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완료해야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함
 - 신화학물질은 중국기준화학물질목록(IECSC*)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의미하며, 목록에 등재된 물질일지라도 허용된 용도 외의 기타 공업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경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
 - 즉, 조제 연마페이스트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필렌·프로페인 등 환경호르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제품의 모든 성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
 - * 중국기준화학물질목록(IECSC,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)은 중국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화학물질의 목록을 의미하며,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됨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중 FTA 특혜관세는 0%이며 MFN은 6.5%로 한-중 FTA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- RCEP의 경우 단계별 관세철폐 품목에 해당되며, 발효 10년차인 2031년 특혜관세율이 0%로 완전 철폐됨

〈 RCEP(중국) HS 3405.40호의 관세 양허스케줄 〉

MFN	특혜관세율							
	2024년 (발효 3년차)	2025년 (발효 4년차)	2026년 (발효 5년차)	2027년 (발효 6년차)	2028년 (발효 7년차)	2029년 (발효 8년차)	2030년 (발효 9년차)	2031년 (발효 10년차)
4.60%	7%	6%	5%	4%	3%	2%	1%	0%

시사점

- ▶ 동 품목은 추후 원산지간이확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은 제34류 제품 등에 대해 간이확인대상 품목 지정 및 관련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
 - FTA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지정될 경우, 원산지증명서 신청 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사료 됨

〈 원산지간이확인제도 대상 품목 〉

- ◎ 간이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, FTA 원산지 증명서류(기관발급 C/O, 확인서) 작성 단계에서 국내제조(포괄)확인서만 제출하여 원산지소명(증빙)이 가능해짐에 따라,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

일반 수출물품	간이발급 대상 수출물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- 수출신고필증 -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- 원산지소명서 -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(제조공정도, BOM, 원재료수불부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제조로 원산지 인정되는 품목 <p>(좌 동)</p> <p>국내제조(포괄)확인서로 대체</p>

- ◎ '22년부터 시작된 동 제도는 HSK, 표준 품명, 활용 가능 협정, 국내 필수 수행 공정 및 제외 공정을 개발하여 총 326개 품목에 대해 고시 운영 중에 있음('24년 3월 29일 개정)
 - 해당 326개의 대상품목은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의 별표 2의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

< 원산지간이확인물품 별표2의2 내용 일부발췌 >

◎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< 유의사항 >

1. 동 별표의 품목번호, 품명 등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, 기타 목적(예: 품목분류 확인 등)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합니다.
 - 가. 국내에서 반가공품(블랭크)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하거나,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
 - 나. 동 별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,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
 - 다.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(HSK)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

시사점

연번	HS	HSK 품명	품명설명	활용대상 협정	국내 필수 공정
41	3406.00-0000	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	왁스,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양초	한-아세안 FTA, 한-중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주요 원재료에 파라핀 왁스 등을 용해하여 심지를 넣고 성형한 후 균혀서 생산

- 하략 -